

「2025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관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2일

부 천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 작업환경 개선사업(바닥 도장 공사, 작업대 설치 등)
 - 노동환경 개선사업(기숙사, 휴게실, 화장실 설치 및 개보수 등)
 - 소방시설 개선사업(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설치 및 개보수 등)
 - 지식산업센터 개선사업(공공시설물 개보수 등)
- 접수기간 : 2024. 9. 2.(월) ~ 10. 4.(금)
- 사업기간 : 2025년 2월 ~ 10월
- 추진절차 및 예상 일정

사업수요 조사 (공고 및 접수)	현장실태조사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 심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확정통보	사업 추진
2024. 9. 2.~ 2024. 10. 4.	2024. 9월~10월 2024. 10월	2024. 12월	2025. 2월	2025. 2월 ~ 10월
부천시	부천시(신청업체) 경기도(표본조사)	협의회 심의(경기도)	확정(경기도) 통보(부천시)	선정업체

2.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접수(rnjswlsxo@korea.kr)

※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55,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1505호 기업지원과
(2024. 10. 4.(금) 18:00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필수서류	1. 사업계획서(서식) 1부 2. 자부담 협약서(서식) 1부 3. 시설물 유지 동의서(서식) 1부 4. 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서(서식)(*임차에 한함 - 건물주.임대인 동의) 5. 정보 활용 동의서 1부(서식) 6. 사업자등록증 1부 (반드시 사업자등록후 1년이상 영업중인 업체에 한함) 7. 총 사업비 산출 증빙서류(내역서 및 견적서) 1부 8. 4대보험 납부증빙서류(고용인원 확인용) 1부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0. 3년 평균 매출액 증빙자료 1부(손익계산서, 조정후수입금액 명세서 등)
추가서류 (증빙서류)	1. 여성기업 확인증 1부 2. 뿌리기업 확인서 1부 3.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1부. 4.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1부 5.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인증서 1부. 6. 어린이집 설치 기업 확인서 1부

○ 문 의 처 : 부천시 기업지원과 창업지원팀(☎032-625-2757)

3. 지원대상 및 내용

① 작업환경

구 분	세 부 사 항
지원대상	도내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제조업)
지원내용	작업공간 내부(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 개보수,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공기순환장치 설치, LED조명 설치, 컨베이어 작업대 ※ 지원제외 : 소모품, 생산 설비, 주문제작 작업대 등 자산성 품목 (예) 작업대 + 설비 부착 = 주문제작
지원요건	■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 이상 사업
재원비율	■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지원한도	■ 도비 10백만원, 시군비 10백만원 이내 ※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도비 13백만원, 시군비 10백만원 이내)
지원우대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이상인 기업 ■ 뿌리기업¹⁾,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장애인 고용 준수기업, 어린이집 설치 기업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제외대상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1) 뿌리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의 기업

2 노동환경

구 분	세 부 사 항
지원대상	도내 소재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지원내용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정화조 등 설치 및 개·보수 ※ 지원허용 : 보일러, 순간온수기 등의 기계설비 ※ 지원제외 : ① TV,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식탁 등의 집기류, 소모품류 ②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 기숙사 신축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열악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장부지 내 기숙사 건축 시 지원 ※ 건폐율 용적률 등 저촉 관련 사전협의 - 제외대상: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경우, 공장부지 외 지역 기숙사 신축, 공사추진 중인 경우
지원요건	■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재원비율	■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지원한도	■ 도비 20백만원, 시군비 20백만원 이내 ※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도비 25백만원, 시군비 20백만원 이내) ■ 기숙사 신축의 경우, 도비 50백만원, 시군비 50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제한 없음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지원우대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이상인 기업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²⁾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³⁾, 어린이집 설치 기업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제외대상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2)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중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3)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상시노동자 50인 이상 기업 중 3.1% 이상 장애인 고용

3 소방시설

구 분	세 부 사 항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도내 소재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지원내용	■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확산 소화기 등 자체 소방시설 설치·개보수 ■ 위험물(리튬 등) 보관 장소 격벽 설치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 ■ 노후 전기배선 교체(작업공간만 해당: 연구실, 사무실 제외) 등 ※ 지원제외 : 설치 시설이 아닌 소화기 등 이동이 가능한 기구 (예) 일반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등
지원요건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2백만원 이상 사업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지식산업센터) ■ 준공 후 7년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총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 사업
재원비율	■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지원한도	■ 도비 35백만원, 시군비 35백만원 이내
지원우대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이상인 기업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어린이집 설치 기업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제외대상	■ 타 유사사업과(정부, 경기도, 시·군 등) 중복지원 ■ 임대·전대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4 지식산업센터

구 분	세 부 사 항
지원대상	도내 소재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지원내용	주차장(주차설비 포함) 및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 노화 기계설 및 전기 설비 개보수 ※ 지원제외 :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지원요건	■ 준공 후 7년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총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 사업
재원비율	■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지원한도	■ 도비 30백만원, 시군비 30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제한 없음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제외대상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4. 기타 유의사항

- 사업비는 부가세(VAT)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여 작성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기업이 부담)
- ※ 공사 후 기업에서 전체금액 부담 후 보조금 지급(사후청구 방식)
- 최근 5년(2020년~2024년) 사업 수혜기업 지원 제외
 - 과거 지원이력에 따라 기업 우선순위 선정
- 개별업체의 사업 분야별(작업, 노동, 지식) 중복 지원 불가
 - 소방시설 분야는 타 분야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예) 기숙사(노동), 바닥 도장(작업) 지원불가 / 기숙사(노동), 화장실 개보수(노동) 지원가능 / 바닥 도장(작업), 자동화재탐지설비(소방) 지원 가능
- 사업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 시 향후 2년간 사업 지원 제외
- 공사비 15백만원(VAT제외) 이상 공사는 반드시 건축공사업 또는 해당 공종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
- 시공업체의 해당 업종 면허증 사본 제출(전기공사업 면허, 실내건설업 면허 등)
-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는 대한전문건설업협회(www.kosca.or.kr)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 사업비 20백만원(VAT제외) 초과인 공사, 물품의 구매인 경우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사업공고 후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계약 체결추진
- ※ 단, 아래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제조, 구매용역 : 시공업체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협동조합에 해당해야 함.
(여성기업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전체 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